



조정회의 요청

언제 조정회의를 요청해야 합니까?

조세국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*조정회의*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조세국의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

- 세금 고지서
- 상환 청구 거절
- 허가증, 등록 또는 면세증의 거절, 취소 또는 정지

조정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?

조정회의는 공식적인 공청회 없이 적정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*회의진행자*로 불리는 공정한 조세국 직원이 회의를 진행합니다. 회의진행자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
- 여러분도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도 있습니다.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위임장 양식 *POA-1 Power of Attorney*(위임장) 또는 유산상속세 위임장 양식 *ET-14 Estate Tax Power of Attorney*(유산상속세 위임장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조정회의 후 회의진행자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*동의서 양식으로 된 해결제안서를 이의제기인에게 보낼 것입니다.*
- *동의서*에 동의하는 경우 이에 서명하여 15일 내로 조세국에 다시 회신해야 합니다. 이로써 조정이 끝나게 됩니다.
- *동의서*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의진행자는 *조정명령(Conciliation Order)*을 발급합니다.이 명령은 이의제기인이 심사과(Division of Tax Appeals)에 공청회 소원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의제기인과 조세국 모두에게 법적구속력을 갖습니다.

조정회의는 어떻게 요청합니까?

1. 양식 *CMS-1-MN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*(조정회의 요청)를 작성하여 해당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. 명시된 기간 내에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증명 우편(certified mail)이나 등기 우편(registered mail)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

**NYS TAX DEPARTMENT
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
W A HARRIMAN CAMPUS
ALBANY NY 12227**

2. 요청서 양식과 함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동봉하여 주십시오. 다음의 서류를 모두 동봉하여 주십시오.

-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해당 통지서 사본
- 정확히 작성된 위임장(본인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)
- 이의제기에 대한 관련자료라고 판단되는 기타 서류들